◘ EU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특징 및 시사점

이경희 선임연구원

1. 개요

단일시장을 지향하는 EU에서는 2001년 이후부터 회원국간 일관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, 영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
□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EU 회원국들은 지난 5년 동안 EU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(FSAP)을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으며, 현재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에서만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제도를 운영함.

□ 보험회사 파산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EU의 금융전략, 감독 협조,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EU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보호기금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있음.

o 그 이유는 역내 국가간 제도가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.

□ 이에 반해 EU의 은행과 증권 부문에 대한 예금자보호지침은 이미 제정된 상태로 은행 부문의 경우 1994년(94/19/EC) 지침(Deposit-Guarantee Directive)을 통해 역내에서 예금 수취 업무에 종사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o 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1997년(97/9/EC) 지침(Investor-Compensation Directive)을 제정해서 역내에서 투자 관련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음.

□ 보험 부문의 경우 아직 지침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, 2001년 11월 유럽보험위원회(Insurance Committee)에서 관련 작업반(Commission Working Group)을 설립한 이후, 일련의 working paper를 발표함.

o 2001.11.26: 보험회사 청산시 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호기금 (MARKT/2061/01)

o 2002. 7.15: 보험계약자보호기금 : 운영상태 및 향후 목표 (MARKT/2517/02)

o 2003. 4. 9: 보험계약자보호기금 : 목표 논쟁 (MARKT/2504/03)

o 2004. 3. 3: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 (MARKT/2501/04)

o 2004.10. 4: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 (MARKT/2513/04)

o 2005. 5.31: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 (MARKT/2512/05)

o 2005.12.12: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(위원회 초안 MARKT/2534/05)

o 이러한 자료 발표와 논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핵심 내용이 드러나고 있음.

□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금융권역을 아우르는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적립모델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.

□ EU 국가들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관련 논의 사항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.

o 이를 위해 2005년 12월에 발표된 유럽보험위원회 초안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 관련 주요 체계 및 논의 사항과 영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검토함.

2. EU 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현황 및 주요 논의 사항

EU국가 중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, EU보험위원회에서는 은행, 증권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 관련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

가. 보험계약자보호기금

1) 운영 현황

□ EU 회원국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대해 보험계약자보호기금(이하 '보호기금'으로 칭함)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, 극히 소수의 국가에서만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음.

o 프랑스는 생명보험, 아일랜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, 스페인의 경우 보호기금은 아니지만,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음.

<표 1> EU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영 현황

	생명보험	손해보험	기타
오스트리아	×	×	
벨기에	×	×	
독일	×	×	
덴마크	×	×	
프랑스	○	×	△[1]
핀란드	×	×	
스페인	×	×	△[2]
그리스	×	×	
이태리	×	×	
아일랜드	×	○	
룩셈부르크	×	×	
네덜란드	×	×	
포르투갈	×	×	
스웨덴	×	×	
영국	○	○	

주 : 1) 질병, 상해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손해보험에 대한 제도 설립 추진 중
2) 계약자보호기금은 아니지만, 1984년 보험계약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(보험사업자청산위원회) 설립하여 계약자 보호

자료 : European Commission, *Insurance guarantee schemes*, January 2003을 참고로 작성

□ 영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권역별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, 통합금융서비스법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: FSMA)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 이후 단일기구(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: FSCS)로 통합하여 운영함.

o 보호하는 금융권역은 5개 부분(sub-scheme)으로 구분됨.

- 예금
- 보험계약(2004년 1월 1일부터 로이즈 계약 포함)
- 보험중개(2005년 1월 14일부터 포함됨)
- 투자 관련 업무
- 모기지 자문 및 체결(2004년 10월 31일부터 포함됨)

□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보험사 파산시 대처 방안은 대부분 강제적 또는 자발적 계약이전·자산매각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, 다른 형태의 계약자 보호장치도 존재함.

o 오스트리아는 타 채권자의 채권에 비해 손해보험종목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우선권을 인정하며,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분리하여 보험금 지급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.

o 생명보험 관련 계약자보호기금만 존재하는 프랑스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됨.

- 만약 이런 방법이 실패하게 되면 감독당국이 개입함.
- 프랑스에서도 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자보호기금 설립을 검토 중임.

2) EU보험위원회 초안의 논의 사항

□ 위원회 초안(이하 초안)에서는 회원국들이 보험보호기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기금을 두어야 한다고 기금 설립 의무를 명시하였음.

o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상호보조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여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명시함.

나. 보호기금의 보호 대상

1) 운영 현황

□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대상 보험종목과 계약자를 가계성 종목의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음.

o 영국

- 신용보험, 해상보험, 항공·운송보험, 재보험 및 로이즈 계약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해 보호기금 적용
- 발생손해액 및 손실 보험료 보호
- 개인 계약자 및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(1.4백만 파운드)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만 보호

o 프랑스

-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발생손해액 및 손실 보험료를 보호
- 특정 법인이나 특정 개인들은 특별한 예금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음.

o 아일랜드

- 손해보험의 개인 계약에 대해서만 보호기금에서 보호함

2) EU보험위원회 초안의 논의 사항

□ 초안에서는 보호기금제도가 보호 대상으로 하는 계약자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.

o 보험계약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고객(professional policyholders)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폭 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약자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이 더 낮음.

o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보호하는 계약자 범주를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한정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음.

o 그럼에도 불구하고, 생명보험, 배상보험과 같은 보험종목은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, 수익자의 보험금 및 대인배상보험금 등은 보호기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.

□ 의무보험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.

o 그러나,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보험보호기구(Motor Guarantee Fund), 의무보험보호기구,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음.

o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이외의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할 것을 제안함.

□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특정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호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나, 보호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o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통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보험금

- 임원, 관리자 및 개인적으로 보험인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보험금, 보험인수 자금의 5% 이상 보유자, 보험인수에 대한 재무제표의 감사 책임이 있는 자 등

- Directive 98/78/EC에 의해 보험그룹에서 인수한 보험의 보완적 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보험금

- 재무적 곤경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당사자들의 보험금

o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적용 배제되는 보험금

- 해상, 운송보험 및 항공보험의 보험금

다. 보호기금의 보상 한도

1) 운영 현황

□ EU 국가들의 보상 한도는 매우 다양한데, 공통적인 특징은 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없거나,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임[1].

o 프랑스의 경우 종목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, 저축성보험의 경우 7만 유로(약 8천 7백만원), 사망 및 질병・상해・장애보험의 경우 9만 유로(약 1억 1천만원)임.

o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보증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보상한도는 보험금의 65%와 825,329 유로(약 10억원) 중 작은 금액으로 함.

o 영국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액을 보상하며,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2천 파운드(약 370만원) 이하는 전액 보장하며 2천 파운드 초과분에 대해서는 90%만 보장하는 공동보험(co-insurance) 형태를 취하고 있음.

- 영국 예금자보호기금은 통합기금임에도 불구하고, 각 권역별 보상한도가 매우 상이함(예금: ￡31,700(약 5천 9백만원), 투자 및 모기지: ￡48,000(약 8천 9백만원), 보험 관련: 한도 없음)

- 영국의 보상한도는 대다수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당 수준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보장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EU지침에서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임.

---

1) 비EU국가의 보상한도

	생명보험, 건강 및 상해보험	손해보험
미국	30만 달러 해약환급금 기준 : 10만 달러 개인연금 : 10만 달러 건강보험 : 50만 달러	재물 및 배상보험 : 30만 달러 미경과보험료 : 1만 달러
캐나다	20만 캐나다 달러 해약환급금 기준 : 6만 캐나다 달러	25만 캐나다 달러
일본	보험금의 90%	보험금의 90%
노르웨이	N/A	한도 없음

<표 2> EU 국가의 보상한도 비교

	생명보험, 건강 및 상해보험	손해보험
프랑스	사망, 질병, 상해, 장애보험 : 9만 유로 저축보험: 7만 유로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	N/A
아일랜드	N/A	Min(보험금의 65%, 825,329 유로)
영국	2천 파운드 이하 : 전액 보장 2천 파운드 초과 : 90% 보장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	2천 파운드 이하 : 전액 보장 2천 파운드 초과 : 90% 보장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
스페인	보호 비중 미확정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	보호 비중 미확정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

주 : 스페인의 경우 예금보험기구와 유사한 CLEA에서 보호
자료 : European Commission, *Insurance guarantee schemes*, January 2003.

<표 3> 영국 예금자보호기금의 권역별 보상한도

(단위: 1계약당)

보험금 유형	보상한도	세부 내용
예금	£31,700	£2,000 이하: 100%, £2,000 초과~£35,000 : 90%
투자	£48,000	£30,000 이하: 100%, £30,000 초과~£50,000 : 90%
모기지 자문 및 체결	£48,000	£30,000 이하: 100%, £30,000 초과~£50,000 : 90%
생명보험(연금)	한도 없음	£2,000 이하: 100%, £2,000 초과 : 90%
손해보험	한도 없음	의무보험 - 100% 비의무보험 - ~£2,000 : 100%, £2,000 초과 : 90%
손보 자문 및 체결	한도 없음	의무보험 - 100% 비의무보험 - ~£2,000 : 100%, £2,000 초과 : 90%

자료 : Oxera, *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*, March 2006.

2) EU보험위원회 초안의 논의 사항

□ 초안에서는 보험 부문의 보상한도는 은행이나 증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야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.

o 은행예금보호지침과 투자자보호지침에서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한도를 1인당 2

만 유로로 통일하였으며, 소액예금(투자)자들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함으로써 금융회사 파산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.

o 반면,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규모가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, 보험회사의 파산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산효과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.

o 대부분의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보호한도보다 높고,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에 부보된 재화(예: 주택)의 가치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.

o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는 보험 분야의 보상한도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, 보험의 보상한도가 은행과 증권보다 높게 설정됨.

□ 위원회에서는 보험계약은 예금 및 투자상품과 달리 계약의 연속성(continuity of contract)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으로는 계약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.

o 이런 문제는 생명보험, 건강보험,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데, 고령자들이 생명보험, 건강보험을 적정 수준의 보험료로 다시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산 보험사의 계약자 부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.

o 따라서, 보호기금은 보험계약을 직접 운영·관리하거나, 타 보험사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음.

□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상범위의 차등화를 명확히 할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호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됨.

o 생명보험의 보상한도는 100 유로(약 13만원)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90% 이상을 보장하도록 함.

o 손해보험의 보상한도는 100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90%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지만, 의무보험과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.

□ 보상방식에 대해 공동보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경쟁 제고 및 시장효율성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.

라. 보호기금 적립방식

1) 운영 현황

□ 소비자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며,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적립모델의 선정이 필요함.

o EU국가들의 보증기금 적립방식은 ‘사전적’(프랑스의 생명보험), ‘사후적’(아일랜드의 손해보험) 또는 ‘사전방식과 사후방식의 혼합형’(영국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)으로 운영되고 있음.

o 현실적으로 파산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, 적립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후갹출에 의존함.

□ 프랑스는 생명보험 부문의 보호기금에 대해 사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, 목표기금 규모는 책임준비금의 0.05% 수준임.

□ 영국의 통합예금보험기금은 향후 1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상보험금 및 관련 경비에 대해서만 사전 부과하는 방식임.

o 장래 용도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부과방식(pay-as-you-go)시스템을 채택하기 때문에 사전적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이 제한되며, 투자 관련 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□ FSCS의 분담금 갹출 방식

o FSA 분담금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며, FSA를 통해 분담금 징수

o 장래 12개월 동안 소요될 비용에 대한 예측(운영경비 및 지급 보험금)에 기반하여 보험료 부과

o FSCS의 비용은 발생확률은 매우 낮지만, 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의 발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.

- 영업 관련 시장환경과 FSA로부터 입수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소요될 비용에 대한 예측을 함.

- 필요한 비용 예측을 위해서는 파산 빈도, 파산 1건당 보험금 지급 규모, 계약 1건당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함.

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금융업권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, 권역별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함.

o 은행의 경우 보호 예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, 부과한도는 부보예금의 0.3% 수준이며, 투자 관련 부문은 누적기준 £400m(약 7천억원)을 부과한도로 함.

o 보험의 경우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, 매년 부과한도는 순보험료의 0.8%를 초과하지 못함.

- 손해보험 중개업자의 보험료는 연소득 기준으로 하며 부과한도는 연소득의 0.8% 수준임.

- 2005년 기준 보험권의 부과한도는 생명보험 및 연금 £544m(약 1조원), 손해보험 £267m(약 5천억원), 손해보험 중개업 £82m(1,500억원) 수준임.

<표 4> 영국 예금자보호기구의 보험료 부과 기준 및 한도

기금	납부 그룹	부과 기준	부과 한도
예금	예금 수취자	보호 예금	부보예금의 0.3%
보험	손해보험 사업자	관련 순보험료	순보험료의 0.8%
	생명보험 사업자	관련 순보험료	
투자	펀드매니저	관리하는 펀드 수	£400m (누적 기준)
	집합투자 관련자	총소득	
	자문 브로커	고객 규모	
	principal dealer	거래 규모	
모기지 자문 및 체결	모기지 자문 및 체결업자	연소득	연소득의 0.8%
손해보험 중개	손해보험중개업자	연소득	연소득의 0.8%

자료 : Oxera, *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*, March 2006.

o FSCS가 출범한 2001년 이후 7년 동안 보험권역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 수준은 연간 0~£130m(약 2,400억원)에 불과함.

- 역대 최대 보험료는 FY2004에 분담한 £130m로서 이는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Independent사와 Chester Street사 파산 관련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부과한 것임.

- 2005 기준 영국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생명보험 £99,270m(약 184조원), 가계성 손해보험 £35,913m(약 67조원)임을 감안할 때 부과된 예보료는 매우 낮은 수준임

o 실제 지출액이 예상보다 적어 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FSCS 재량으로 해당 권역의 금융회사들에게 환급해 줄 수도 있음.

- FSCS는 FY2005에 손해보험회사들에게 £42m(780억원)을 환급한 바 있음.

<표 5> 영국의 예금보험료 추이(보험 부문)

(단위: 백만 파운드)

	FY2001	FY2002	FY2003	FY2004	FY2005	FY2006	FY2007
생명보험	0	0	0	0	0	0	0.5
손해보험	150	0	0	130	45	0	0
손보중개	0	0	0	0	1.3	0.5	2.0

자료 : http://www.fscs.org.uk/industry/funding/Levy_Information/Levy_Amounts에서 작성

2) 초안의 논의 사항

□ 초안에서는 기금 적립방식에 대해 사전적립과 사후갹출의 장·단점을 검토하는 등 적정한 기금 적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.

o 사전적립방식의 장점은

- 대규모 손실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

- 이론적으로 리스크에 기준한 보험료 징수를 통해 잠재적인 부실보험사로부터 갹출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

- 파산 금융기관이 그들이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 일정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

- 납부 기간 동안 평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임.

o 사전적립방식의 단점은

-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보호기금으로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아짐

- 기금운용을 위한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(deadweight costs of capital)이 발생함.

o 사후갹출방식의 장점은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, 단점으로는 생존회사가 손실금을 분담한다는 것임.

3) 영국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사항

□ 통합예보기금을 운영 중인 영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.

o 2006년 3월 개선안인 discussion paper(DP06/1: FSCS funding review)를 발표하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consultation paper를 2007년 3월에 발표하였음.

o 개선안이 승인될 경우 FY2008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예정임.

□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기금적립방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하부 그룹[2)]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, 각 권역별로 다시 상품 공급자(provision)와 중개업자(intermediation)로 구분하였음.

o 개선모델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

① 영속성과 탄력성: 예금보험제도는 장래 시나리오 변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함.

② 동질성: 영업활동 유형이 동질적인 회사들이 하부 그룹(sub-classes)으로 분류되어야 함(예: 생명보험과 연금 중개 그룹).

③ 공통의 이익: 상호 관련성이 높은 회사들끼리는 예금보험 부채에 대해 상호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짐.

④ 공정성: 일차적으로 하부 그룹에서 파산비용을 부담하고,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하부 그룹 내 타 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함.

⑤ 가용성: 보상비용은 각각의 하부 그룹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.

⑥ 낮은 변동성: 부과방식 하에서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, 보험료 부과의 변동성을 낮추도록 함.

⑦ 경제성과 실용성: 제도를 운영하는 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함.

---

2) 생보 및 연금 / 투자 / 손해보험 / 예금 / 가계금융

□ 또한, 현재 1년 단위로 예보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 산출 주기를 2년 단위로 늘리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.

마. EU지침 관련 쟁점 사항 및 기타

□ 유럽보험위원회에서 EU지침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.

① 계약자보호기금에 관한 지침이 최저 수준의 통일성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?

②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구별이 바람직한가?

③ 부분보장과 자가보유가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?

④ 지침에서 소규모업체를 보호해야 하는가?

⑤ 보험보호기금에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해 보장해야 하는가?

□ 단체보험 관련 이슈

o 계약자의 사업영위와 관계없이 자연인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치되었으나, 단체보험, 근재보험(workmens' compensation insurance), 근무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등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.

o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는 "소규모 기업"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모색하고 있음.[3)]

□ 위원회에서는 보험보호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의 인식향상을 지적하였음.

o 보호기금은 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,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야 함.

o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보호기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.

---

3) 연간매출액 규모가 2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, 종업원 10명 미만인 고용주를 의미함

3. 시사점

EU국가의 보호기금 운용실태 및 지침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① 보험계약의 영속성 중시, ② 낮은 목표기금, ③ 보호기금의 역할 제한, ④ 은행·증권과 보험금의 보상한도 차등화, ⑤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보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

□ EU국가에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며,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함.

o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보호를 위해 계약이전을 하며,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.

o 이러한 현상은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보험금 지급보다는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.

□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립하는 기금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, 영국의 경우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.

o 기금을 사전적립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며, 목표기금 규모도 책임준비금의 0.05%에 불과함.

o 영국의 경우 적립금이 존재하지 않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부과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우 탄력적이며 보험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.

□ EU에서 추진 중인 보험계약자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은 보호기금의 역할과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기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.

o 보호기금의 역할은 감독적 목적이 아니라 보험사업자 파산시 계약자를 보호하는데 한정되고 있음.

□ 보험금에 대한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의 보장성 측면을 최대한 반영하여 은행・증권(2만 유로)보다 높게 설정함.

o 다만,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보험 방식(100 유로 초과분의

90%, 의무보험 및 제3자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은 무제한)을 선택함.

o 보호대상은 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계약자로 한정함.

□ 예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.

o 특히 EU지침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은 은행·증권과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